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노래연습장 출입자 대상 증표 제시 요구 등 근거 신설 〉

- 신성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92호)
- 김윤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49호)

2024.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신성범의원안

가. 발 의 자: 신성범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2024. 6. 11.

다. 회 부 일: 2024. 6. 12.

2. 김윤덕의원안

가. 발 의 자: 김윤덕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2024. 6. 19.

다. 회 부 일: 2024. 6.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신성범의원안

현행법상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청소년이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출입하지 않도록 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확인 등 근거조항이 부족하여 청소년이 고의로 출입시간 외에 출입하여 노래연습장 사업

자의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의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2. 김윤덕의원안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요지

두 개정안은 모두 노래연습장업자가 노래연습장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문 위치 및 일부 문구 등에 있어서만 다소 차이가 있음.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신성범의원안	김윤덕의원안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후단 신설>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 ----- ----- --. 이 경우 노래연습장업자는 제2호 또는 제6호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에게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현행	신성범의원안	김윤덕의원안
1. ~ 6. (생략) <신설>	② 노래연습장업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6호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제34조(벌칙) ① ~ ③ (생략) ④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4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2조제3항----- ----- ----- -----. ⑤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벌칙)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현행법 제22조¹⁾제1항제2호는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시간²⁾ 외에는 부모 등을 동반하지 않거나 출입동의서를 받지 않은 청소년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음. 또한, 같은 항 제6호 및 그에 따른 시행령 [별표 1]³⁾은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부모 등이 동반하지 않은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노래연습장업자가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노래연습장 출입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등의 제시를 요구하여 나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다만, 현재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종사자의 나이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 요구 규정⁴⁾과 정의 규정⁵⁾의 청소년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해당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고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接客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이라 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제9조관련)

2.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년유해업소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등 개념을 연결하여 해석을 통해 적용하고 있으나, 노래연습장 관련 사업자가 이해하기 복잡한 측면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법상 사정에 맞게 증표 제시나 관련 사항이 적용되도록 「청소년 보호법」에 모두 규정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에게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나이 확인이 가능한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이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청소년 출입시간

-
-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제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④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 ⑥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5)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범위) ③ 법 제2조제5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외의 청소년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증표 제시 요구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업주 및 종사자 등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다만, 개정안에 따라 근거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김윤덕의원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이를 의무적 사항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나, 증표 제시와 관련한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4항의 입법례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재량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증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성인임이 자명한 경우와 같이 반드시 입장을 제한하지는 않아도 되는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성범의원안과 같이 이를 재량적 사항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둘째, 김윤덕의원안은 노래연습장업자가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권한’을 제22조제1항 후단으로 신설하려는 것이나, 위 제22조제1항은 노래방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를 제1항에 함께 규정하기보다는 법률 이해의 용이성 측면에서 신성범의원안과 같이 별도의 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셋째,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4항의 ‘주민등록증’에 ‘모바일 주민등록증’⁶⁾이 포함되도록 개정되어 2024. 12. 27.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⁷⁾ 이에 맞추어 신성범의원안과 같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부분의 시행일도 2024. 12. 27.로 맞출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증표 제시 요구 등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288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2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318호)과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668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64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647호)이 우리 위원회에 함께 회부되어 있음.⁸⁾

6) 실물 주민등록증 대신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25년부터 정식 시행 예정임.

7) **법률 제19841호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④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시행 2024.12.27.>

8) 다른 개정안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 시 행정처분 면제’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본 개정안의 경우 위 내용이 제외되어 있는데, 이는 지난 2022. 9. 27. 법률 개정 시 제27조에 해당 내용이 아래와 같이 이미 추가되었기 때문임.

문 의 처

02)6788-537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등록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을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중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2. 영업을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4.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때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을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